

울산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1가단72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김순득

피 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익래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는 60,000,000원, 피고 C, D, E은 각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F 일원에 A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이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체비지대장에 위 사업지구 H노트 토지 595㎡(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4. 4. 7.경 망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11499호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원고의 체비지 대장상 망인 명의의 소유자 등재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체비지대장상소유자명의등재말소청구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인 2006. 1. 27.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원고는 망인이 추가보상(금 1억 8,000만 원)으로 취득한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원고 체비지 대장상에 1993. 8. 17.자로 마친 망인 명의의 소유자 등재가 진정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하는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망인은 2020. 3. 20. 사망하였고,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라. 원고는 2021. 7. 21.경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21재가단12호로 이 사건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2.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1993. 8. 17. 매매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대의원회의 의결이 없어 무효이고, 체비지의 처분은 조합원 총회나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인데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당시 원고의 조합장이었던 I은 위와 같은 총회나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종전 소송 계속 중 망인과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를 하였으므로 위 화해조서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의 원상회복 불능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체비지의 취득에 갈음하였던 추가보상금 1억 8,000만 원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망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재된 위 체비지에 관한 망인의 소유권 확인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어 선결적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망인의 소유권 취득 무효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이전에도 가능하였으므로, 위 화해조서의 효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

따라서 후소의 법원으로서 이 사건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기속되어 위 화해조서에서의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